

**수사에 있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경찰의 역할**

**수사에 있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김 학 신

【목 차】

I. 서론	1
II. 장애인 인권의 개념과 인권보호 규정	4
1. 장애인의 정의	4
2. 장애인의 인권	6
3. 수사상 장애인 인권보호 규정	7
가. 형사소송법	8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9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10
III. 수사기관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유형	11
1. 일반적 인권침해 현황	11
2. 수사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 유형	14
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 부족	15
나. 수사 과정에 있어 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부재	16
다. 불법적인 수사관행	17
IV. 수사기관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	19

1. 수사상 장애인 권리의 불고지	19
2.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21
3. 장애인 수사시 신뢰관계자의 동석	21
4. 장애인의 변호인 접견권	23
V. 수사상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25
1. 경찰의 적법절차의 준수	25
2.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인권 교육	28
3. 장애인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모색	29
4. 장애인 전문 통역인의 양성과 의무 참여	33
5. 경찰서 장애인 유치실의 개선	35
6. 장애인의 보조 기구 구비	37
7. 장애인 수사시 속기사 지원의 정착	38
VI. 결 론	40
【참 고 문 헌】	42

【표 차례】

[표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 현황	12
--------------------------------	----

[표 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유형별 처리현황	13
[표 3]	죄종별 진술 녹화 현황	26
[표 4]	진술녹화실 설치 현황	27
[표 5]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현황	30
[표 6]	피의자 검거인원 대비 현황	31
[표 7]	전국의 유치장 운영 현황	35

I. 서론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¹⁾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 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에서도 인권침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늘 언론을 통하여 빈번하게 공개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사시 인권침해가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최근의 한 사례로 성폭행 피해자인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변호인이나 친척 등 어느 누구에게도 법률적인 도움도

1) 이는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다.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받지 못한 채 가해자의 위협과 수사기관의 위압적인 수사로 인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불리한 진술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어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오히려 그 피해여성이 무고죄로 고소된 사건이었다. 물론 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개입하여 무고죄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²⁾ 이러한 사례 이전에도 경찰관 피살사건 정신지체인 강제 자백 사건, 청각언어장애인의 수사과정에서 언어 소통상의 문제로 인한 편파수사,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 물이해로 인한 문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시각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무시 등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있었다.

이렇게 장애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외에도 가해자가 될 때도 있는데, 특히 지적장애인은 윤리, 도덕 관념이나 준법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어떤 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나 불법적인 인식을 느끼지 못한 채 범죄행위를 실행하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장애인이 가해자가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색이 정상인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고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손쉽게 범죄자를 만들고, 가해자들이 장애인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여 장애인들은 본인들의 권리도 펼쳐보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이처럼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국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7>(2012. 11. 1 검색).

이러한 장애인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은 수사기관에 의한 장애인 수사에 있어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물론 장애인의 인권침해요소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사법 활동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짧은 단편과제로 기소, 재판, 형집행 등 형사사법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부분은 차후 과제로 넘기기로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경찰의 역할로서 항상 문제가 되는 적법절차 준수,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인권교육,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참여 모색, 장애인 전문 통역인의 양성과 의무적인 참여, 경찰서 장애인 유치실의 개선안, 경찰서에 장애인 보조 기구의 구비, 장애인 수사시 속기사 지원의 정착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본 보고서가 앞으로 경찰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장애인 인권의 개념과 인권보호 규정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제2조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장애인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은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³⁾에서 ‘사람의 주요한 일상

3) 미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최초의 장애차별금지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의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기본 원리와 규정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소영, 미국과 한국의 장애차별금지법 비교(제정과정의 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비교법문화연구원 2012년 국제 심포

활동 중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 실질적 제약을 갖게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지닌 자, 그러한 손상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손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 로 분류하고 있는데⁴⁾ 이 규정은 장애를 회복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짐으로서 한번이라도 오진 받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취급받은 사람 등을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개념 규정이라 할 수 있다.⁵⁾

영국에서는 영국 「장애인차별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규정에 장애인이라 함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실질적·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⁶⁾

일본은 1993년 장애자기본법(障害者基本法)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로 정의하고 있다.⁷⁾

UN의 장애인권리선언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제1항은 장애인을 선천적·후천적 여부에 상관없이,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부족 때문에 보통의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을 혼자서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⁸⁾

지엄 자료집, 2012, 11. 3, 135면.

4)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3.

5) Marc Do Stolman, A guide to Legal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emos Publications, Inc., 1994, p.28.

6) 여기서 '손상' 이라 함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동력, 손기능, 신체협동력, 지속력, 들 수 있는 능력, 말하고 듣고 보는 능력,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능력 또는 이해력,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 등을 의미한다. 盧廣鎬, 障礙人의 人權에 關한 憲法의 考察,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7면.

7) 국회도서관입법조사분석실, 日本의 障害者基本法(1993), 국회도서관, 1994.

8) 1975년 12월 9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데, 전문(前文) 및 1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의 원인, 특질,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원조, 경제적·사회적 보장,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국가와 사회구조, 경제여건 권리의 주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에 살면서도 자라온 환경과 주위여건에 따라 장애인을 보는 시각도 개인편차가 있으며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2. 장애인의 인권

인권 혹은 인간의 권리(human rights)라 함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의 관념은 계몽주의적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 등 근대적 사상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천부인권론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⁹⁾

이러한 기초하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권을 실정법에 의한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에게 인권보장의 최대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모든 국민’의 의미는 정상인과 더불어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되며, 헌법상 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는 특별히 보호를 해야한다고 규

사회적 활동의 보장 등, 심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그것을 위한 의학적 재활, 사회적·교육적·직업적 재활의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장애인의 모든 권리의 보장을 위해 각 국내 및 국제적인 행동을 제기하고 있다.

9) 金哲洙, 憲法學新論, 博英社, 2010, 296면.

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인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를 말하며, 국가권력은 이 기본적인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장애인의 인권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3. 수사상 장애인 인권보호 규정

수사(搜查)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고,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인을 발견·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수사활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수사절차(搜查節次)라 한다.¹⁰⁾

수사는 범죄의 제압이나 범인 검거, 증거의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처분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절차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주의, 체포·구속적부심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등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¹¹⁾

10)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29면.

11) 이기수, 수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보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0집, 2012. 10, 600면.

범죄 수사과정은 대부분 강제수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 등에서 신분에 따르는 차별금지규정과 심신장애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¹²⁾

가. 형사소송법

우리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Act) 제180조, 제181조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농자(聾者) 또는 아자(啞者)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례에서 수사기관은 청각장애인에게 일반전화로 '상해,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문자 대화만 가능한 청각장애인은 수사기관에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¹³⁾ 수사관은 장애인, 노약자, 여성, 아동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는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

12) 양상섭, 범죄수사과정에 나타난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8, 11면.

13) 법률신문, 청각장애인에 전화로 검찰 출석 통지 '차별행위', 2012, 8. 24.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¹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이다. 그리고 동법 제276조의2는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재판장 또는 법관은 장애인인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형사소송규칙 제126조.

그리고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은 2005년 경찰청 인권센터 설립과 더불어 경찰청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한 이후 꾸준히 인권보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인권옹호기관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도 경찰관은 장애인을 수사 할 경우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켜야 할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①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同姓) 통역사의 참여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 장비 등의 마

련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찰은 장애인 수사시 그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장애인 자신들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5조에서도 ‘농아자(聾啞者)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 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들이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수사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하여 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¹⁵⁾

Ⅲ. 수사기관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유형

1. 일반적 인권침해 현황

2001년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2012년 7. 31까지 진정사건 처리현황을 아래 [표1]에서 살펴보면, 총64,194건 중 인권침해 사건 49,271건으로 전체 사건

15) 이기수, 앞의 논문, 614면.

에서 76.1%를 차지하고, 차별행위는 12,927건으로 19.3%, 그리고 기타 1,996건으로 3%를 차지하고 있다. [표1]에서 보듯이 차별행위보다는 인권침해 행위가 76%나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는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 현황¹⁶⁾

(2001. 11. 25. ~ 2012. 7. 31.)

구분	접수 (A)	종결 (B)	수사 의뢰	한 의 귀 고	권고	고 발	징 계 귀 고	기 금 구 제	합의 종결	각하	이승	가각	구 성 비 (%)
합계	64,194	61,308	24	5	2,420	70	91	10	1,104	38,742	1,084	17,260	100
침해	49,271	47,203	22	5	1,465	63	88	10	703	29,737	983	13,744	76.1
차별	12,927	12,205	2	-	933	7	3	-	396	7,227	91	3,434	19.3
기타	1,996	1,900	-	-	22	-	-	-	5	1,778	10	82	3

출처: 201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자료 재편성.

다음은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유형별 처리 현황으로 아래 [표2]에서 보듯이 경찰, 검찰, 구금시설 등의 국가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11월부터 2012년 7. 31까지 총49,271건 중 경찰은 10,788건으로 16.8%를 차지하고, 검찰은 1,977건으로 3%, 구

16) <http://www.humanrights.go.kr>.

금시설은 18,234건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유형별 처리현황¹⁷⁾

(2001. 11. 25. ~ 2012. 7. 31.)

구분	접수	종결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각하	이송	기각	구 성 비 (%)
합계	49,271	47,203	22	1,465	63	88	29,737	983	13,744	76.1
검찰	1,977	1,910	2	57	1	1	1,296	38	479	3
경찰	10,788	10,272	12	497	8	61	5,788	158	3,336	16.8
국정원	193	187	-	3	-	-	163	-	18	0.3
특사경	169	169	-	11	3	-	89	2	57	0.2
지방 자치단체	2,369	2,207	-	94	-	2	1,456	15	558	3.6
사법기관	719	689	-	9	-	-	566	4	106	1.1
입법기관	47	47	-	5	-	-	36	2	4	0
기타 국가기관	5,302	5,130	-	139	-	4	3,954	28	936	8.2
구금시설	18,234	17,842	2	236	1	16	10,846	675	5,884	28.4
다수인 보호시설	6,623	6,230	2	355	49	2	3,522	45	2,013	10.3
군	1,011	944	4	35	1	2	736	8	136	1.5
각급학교	672	483	-	12	-	-	388	1	66	1
출입국관리 사무소 등	66	60	-	1	-	-	46	-	11	0.1
공직 유관단체	74	43	-	-	-	-	43	-	-	0.1
기타	1,027	990	-	11	-	-	808	7	140	1.5

출처: 201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자료 재편성.

17) <http://www.humanrights.go.kr>.

2007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경찰 관련 인권침해 상담은 2008년 이후 다수인보호시설인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증가와 경찰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에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정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법무부는 2009년 4월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임산부 등을 검찰청, 법원, 외부병원 등에 호송할 때 대한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 현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인권침해의 현황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인권침해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통계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수사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 유형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장애인 수는 268만3,400명으로 인구 1만명당 장애인 수도 56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6년 동안 50만명이나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¹⁸⁾

18) 한국일보, 후천적 고령 장애 급증...장애인 6년새 50만명 늘어, 2012. 12. 6일자.

이러한 장애인 증가추세와 더불어 경찰, 검찰수사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부족, 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부재, 피해구제의 미비, 장애인에 대한 주변 도움의 부족, 신뢰관계인 및 변호인의 참여 불허, 불법적인 수사관행, 적법절차 미준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 부족

수사관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성과 장애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각 장애유형별 특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장애를 단지 ‘문제’ 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청각장애인이나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소통능력이 아예 없으므로 간주하고 무시하거나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진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날인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¹⁹⁾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공무원 연수교재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정신지체 3급이면서 자폐성향을 보이는 18세 고등학생인 홍군은 수업 중 학교근처의 교회를 배회하다가 관리인의 신고로 파출소로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관리인은 예전에도 교회에서 자판기 돈이나 성경이 없어진 일이 있었다고 귀뜸 했고, 이에 경찰은 홍군을 조사하였다. 홍군은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자폐성향’ 이 있던 터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장애’ 가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지만, 조사를 마칠 때까지 보호자나 학교로 연락이

19) 이은미·한상훈·김지혜, 영성장애인 피의자의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2005(겨울호), 66면.

가지 않았다. 이에 홍군은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야 연락을 받은 홍군의 어머니가 검찰로 찾아갔지만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자폐성향이 있는 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또한 수사기관의 질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설령 질문의 의도를 이해했다고 해도 그 의도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범죄혐의에 대한 추궁에 장애인이 어눌하게 답변을 하거나 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수사관은 유죄의 징표로 단정하고 유죄로 몰아가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²⁰⁾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인식의 부족 또는 장애인의 대한 무지 등의 원인에 의한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체계적인 조사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사 과정에 있어 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부재

범죄 수사시에 장애인 지원서비스 부재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수화통역사의 잘못된 통역이 범죄수사를 받고 있는 청각장애인에 대해 피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법률용어에 있는 단어들이 수화로는 단어자체가 없거나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작은 단어 하나 해석을 잘못했다가는 청각장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 하나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²¹⁾

수사과정은 아니지만 2012년 10월 해양경찰은 청각·언어장애인의 권

20) 이기수, 앞의 논문, 605면.

21) 양상섭, 앞의 논문, 32면.

익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민원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상 수화 상담 서비스’ 를 시행하고 있다. 해경은 국민권익위원회 110 화상 수화통역 서비스와 연계해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화상 수화 상담서비스’ 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컴퓨터 화상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110 수화통역사에게 수화로 의사 전달을 하면 수화통역사가 담당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민원인의 의사를 전달하면 민원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²²⁾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설치는 경찰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세심한 배려이며,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다가서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다. 불법적인 수사관행

수사기관의 장애인 조사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며, 또한 반말, 무시하는 말, 폭언, 욕설, 비하 발언, 협박 등의 언어폭력은 자주 발견되는 사례들이고,²³⁾ 체포와 신문과정에서의 물리적 폭행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201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68세의 고령의 청각장애인을 경찰관이 폭행하고 사후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소홀히 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체포과정에서 장애인의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로 헬멧이나 목발 등의 보호장구를 지참하지 못하게 한 채 체포·연행하여 장시간 조사함으로써 사실상 가혹행위 상태를 만드는 사례도 있다. 또한 신문과

22) 뉴시스, 해경, 청각·언어 장애인 수화 통역 상담서비스, 2012. 10. 2.

23) 한 예로 경찰관의 막말로 ‘나잇살 처먹은 게 거짓말을 더 잘한다’ 라며 막말하는 경찰관;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데, ‘할아버지 시끄러워 조용해!’ , ‘나잇살 처 먹은게 거짓말을 더 잘해!’ 라고 욕박질렀다. 노인은 “난 장애인이라서 싸움을 못해요.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라고 항변하자, 경찰관은 “요새는 장애인이 더 잘 때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틀림없이 가해자야” 라며 모멸감을 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2010. 11. 25, 86면.

정에서 유도신문이나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결함을 무시하고, 야간에 장시간 조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²⁴⁾

따라서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장애인 수사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지양하고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24) 이기수, 앞의 논문, 608면.

IV. 수사기관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상 형사절차에서도 이는 적용이 된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는 늘 인권침해의 소지 가능성이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접수를 보더라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는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수사기관, 구금기관은 인권보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권리에 대한 불고지, 변호인의 접견권, 장애유무의 확인,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전문적인 통역인 및 보조인의 도움, 보조인 선정에 대한 고지 의무화, 장애인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장 교육의 의무화 등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수사상에 있어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수사상 장애인 권리의 불고지

권리의 불고지는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인에게도 나타나는 인권침해로 수사에 있어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이다. 보통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라고 하는데, 피의자가 체포·구속시 변호사의 선임권, 묵비권 등의 피의자 권리와 체포의 이유 및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권 등의 고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불완전하여 간혹 그들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할 때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경찰서 등 수사기관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통역인 인력풀 만들어 긴급하게 장애로 인한 통역인이 필요한 경우 이들을 투입시켜 수사에 있어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한 예로 2010년 기준 법원에 배치된 수화통역사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등 23개 법원에서 확보한 수화통역인 93명으로 법원 평균 4명꼴이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은 수화통역인이 아예 없으며,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도 수화통역인이 단 한 명뿐이다. 이처럼 법원의 경우에도 수화통역사가 부족한 것이 현 실태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법원에서조차도 수화통역사가 부족한데, 그 보다 더 열악한 경찰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문 통역사의 확보하기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전문 통역사를 통한 장애인 권리의 불고지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전문 통역인을 통한 피의자 권리고지는 수사전에 장애인 피의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진술거부권, 가족과의 연락, 변호인의 선임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하여 전문적인 통역인 확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특히 통역인의 경우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2. 수사과정에서의 다양한 장애인 인권침해

수사란 침해된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과 충돌이 불가피한 국가작용이다. 이러한 수사에 있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이 피해자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 신체가 부자유스럽고, 말이 어눌하다고 반말을 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무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가벼운 폭력, 성추행, 성폭력, 불공정한 조사 등의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이나 자백을 강요 받은 사례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찰은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교육과 불법적인 수사직무사례 등의 발표를 통해 같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인권은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당사자의 책임 등 그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수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최선의 인권보호 방법임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수사시 신뢰관계자의 동석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장애인을 비롯한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형식을 보면 신뢰관계인인 동석은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동석요청을 거절했을 경우 제재수단이 없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²⁵⁾

한 예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아유기치사 사건의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여성 지적장애인(정신지체2급)을 보호자, 변호인 혹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석시키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건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여성 지적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도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를 구속했지만, 사망한 영아와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모자관계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원의 확인으로 무혐의로 석방된 사건이다.²⁶⁾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같은 미성년자 및 장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심리적 위축감으로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

25) 이기수, 앞의 논문, 617-618면.

26) 국가인권위원회, 미성년 지적장애인 강압수사한 경찰 징계 권고, 보도자료, 2009. 1. 5.

라,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사건을 진술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사회적 약자로 ‘미성년과 여성, 장애인’을 특별히 정하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이들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은 정신지체2급이고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할 지적인 능력이 없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석시켜 다시 조사를 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의 사례처럼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이들을 위해 신뢰관계가 있는 자를 반드시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의 변호인 접견권

장애인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권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의상, 수사의 지연 등의 이유로 변호인 접견과 연락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인은 접견권은 헌법 제12조 4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조사나 심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제243조의2에서 수사단계의 변호인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관서에서 수사시 변호인 참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2008년의 경우 피의자 150여만명 중 988건으로 0.06%, 2009년 160여만명 중 941건으로 0.06%, 2010년 130여만명 중 1,065건으로 0.08%, 2011년 130여만명 중 1,439건으로 0.11%를 차지하고 있다.²⁷⁾

최근 4년간의 경찰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극소한 참여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강제적으로 선임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국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27) 경찰청,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현황, 2012. 9,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V.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1. 경찰의 적법절차의 준수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헌법, 형사소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각종 법규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장애인 수사시 철저히 지켜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불법적인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하며, 이는 결국 국가의 신뢰도 하락과 경제적 손실이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영상녹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찰의 경우 내부지침으로 살인, 강간, 증수죄, 공직선거 등 선거사범에 대하여 반드시 영상녹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강도, 절도, 마약, 사기, 횡령, 배임 등 주요 범죄와 사회이목이 집중되거나 진술번복 또는 민원야기가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가급적 진술녹화를 권고하고 있다.²⁸⁾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실시한 영상녹화 실시건수는 2008년 89,338건, 2009년 73,371건, 2010년 32,124건, 2011년 15,696건, 2012년 8월(기준) 9,585건 이다.

28) 이기수, 허위자백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2012. 7, 270면.

이러한 영상녹화는 수사시 인권침해 문제를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으며, 장애인 진술의 진위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 진실규명을 위한 풍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²⁹⁾

[표 3] 최종별 진술 녹화 현황³⁰⁾

(단위 : 건)

구분	계	필수범죄					중요범죄				
		소계	살인	강간·성폭력	증수뢰	선거사범	소계	강·절도	마약사범	사기	횡령, 배임
'09년	73,371	15,776	1,948	12,148	806	874	57,595	17,861	695	33,284	5,755
'10년	32,124	15,402	1,690	10,857	1,294	1,561	16,722	8,008	519	6,632	1,563
'11년	15,696	9,039	1,240	7,320	386	93	6,657	3,608	681	1,703	665
'12. 8월	9,585	6,394	877	4,686	214	617	3,191	1,432	540	963	256

현재 우리의 모든 경찰관서에서는 영상녹화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8월 기준으로 560개의 녹화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98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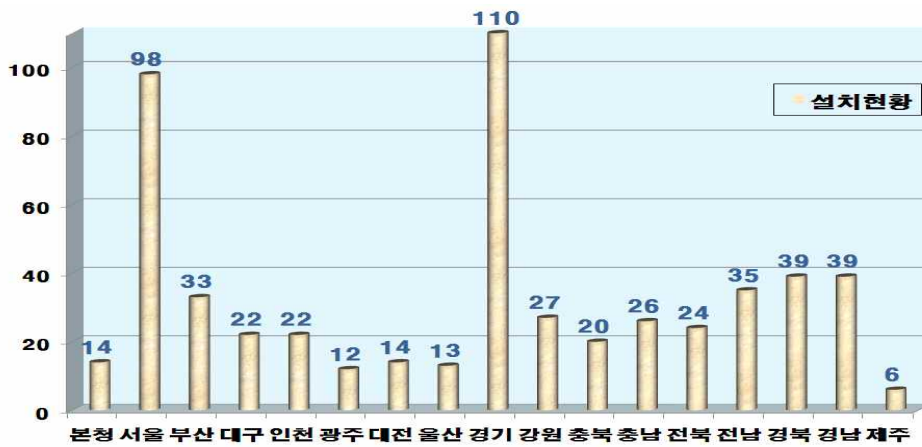
29) 김택수, 형사절차법상 장애인 차별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제5권 제2호, 경찰법학회, 2007, 243면.

30) 경찰청, 최종별 진술녹화 현황, 2012, 8,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표 4] 진술녹화실 설치 현황³¹⁾

(단위 : 개)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60	14	101	37	22	20	14	14	13	106	27	20	26	24	37	40	37	8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진술영상녹화를 실시하여 경찰관의 적법절차 이행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더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인권보호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1) 경찰청, 진술녹화실 설치 현황, 2012, 8,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2.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인권 교육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규정은 의미가 없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무지, 무시 등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장애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인권의식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정신지체장애자나 아동·청소년의 조사시에는 특별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신지체자와 관련해 플로리다주(州) 브라운(Brown) 카운티에서는 매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정신지체자를 적절하게 신문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정신지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여 허위로 자백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문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경찰은 먼저 정신지체자가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질문은 천천히, 분명하게 하며, 단답형보다는 서술형의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든가, 대답을 암시하는 유도질문은 금지됨을 교육하고 있다.³²⁾

우리 경찰의 경우, 최근까지 신임순경의 인권교육은 교육기간 8개월 중 단 6시간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2013년 부터는 2시간을 더 배정하여 8시간 이지만, 이 정도로 배정된 인권교육으로는 경찰관이 전문적인 인권의식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형식적으로 인권 교육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 충분한 인권교육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론적

32) 이기수, 허위자백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2012. 7, 283면.

인 교육에 한정하지 말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인권에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은 장애인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1년도부터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아동 성폭력 수사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3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년에 3회 90여명을 교육하여 전문가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³³⁾ 전국의 경찰관서 기준, 교육 횟수, 교육 인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성폭력 범죄만을 한정하여 교육하는 것 보다는 그 이외의 다양한 범죄와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만을 특화시켜 전문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경찰은 장애인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전문가를 양성 할 수 있으며, 이들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전문화된 교육 결과는 결국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앞으로 이러한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에게 전문화된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전문 강사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모색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변호인이 수사과정에 반

33) 경찰청, 2012 경찰백서, 2012. 10, 161-162.

34) 김재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진술증거 수집에 관한 연구, 경찰학 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3호), 경찰대학, 2010, p86.

드시 참여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재판과정보다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

2007년 개정 형소법은 제243조의2에서 수사단계의 변호인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수사시 변호인 참여가 형식적인 규정일 정도로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실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데 경찰청의 최근 자료통계에 의하면,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검거인원대비 변호인의 참여 현황은 다음 [표5], [표6]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8년의 경우 피의자 1,541,285명 중 변호인 참여횟수는 988건으로 0.06%를 차지하고, 2009년 1,691,993명 중 941건으로 0.06%, 2010년 1,389,986명 중 1,065건으로 0.08%, 2011년 1,356,359명 중 1,439건으로 0.11%, 그리고 2012년 9월(기준) 형사사건 피의자 907,995명 중 변호인 참여횟수는 1,283건으로 0.13%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현황³⁵⁾

(단위, 건)

관서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년	988	483	37	17	44	7	6	15	261	12	25	19	25	3	5	26	3
'09년	941	336	45	2	39	26	5	8	318	12	9	49	31	11	34	15	1
'10년	1,065	343	26	11	65	33	5	5	468	23	18	11	3	8	7	35	4
'11년	1,439	489	80	17	154	18	-	-	478	24	27	78	40	4	11	14	5
'12. 9월	1,283	537	22	34	137	5	-	13	374	33	8	60	17	4	3	22	14

35) 경찰청,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현황, 2012. 9,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이와 같은 변호인 참여 실적은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경찰에서 검거하여 조사하는 피의자 검거인원 대비 비율로 본다면 2011년 기준으로 0,11%에 불과에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변호인 참여제도가 법상 존재하는 것일 뿐 체포된 피의자들에게는 여전히 형식적인 인권보장책일 수 밖에 없다.³⁶⁾ 이러한 실태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시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일선 경찰과의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피의자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 현황³⁷⁾

연도 구분	형사사건 검거인원(명)	변호인 참여 횟수(건)	비율(%)
'08년	1,541,285	988	0.06
'09년	1,691,993	941	0.06
'10년	1,389,986	1,065	0.08
'11년	1,356,359	1,439	0.11
'12. 9월	1,026,301	1,283	0.13

또한 재판에 참여하는 국선변호인의 경우 2010년 8월 기준 전국에 137

36) 이영돈,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법적 지원에 관한 연구 -영국 PACE(경찰과 형사 증거법)와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249면; 이기수, 허위자백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2012. 7, 275면.

37) 경찰청, 피의자 검거인원 대비 현황, 2012. 9,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명이다. 이들이 2009년 한해 전체 형사사건의 25.5%인 2만 4,341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70%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이다.³⁸⁾ 재판과정에서의 국선변호인의 수의 부족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너무 어렵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변호사와 수사관이 모두 원치 않는다는 점에 있다. 우선 변호사는 수사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와 함께 앉아 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기피한다. 수사관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변명 같은 이유도 존재한다. 수사관은 변호인을 부담스러워하고, 조사가 번거로워지는 등의 이유로 원치 않는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또 변호인이 참여함에 따른 수임료 부담의 증가도 부담스러울 것이다.³⁹⁾

우리 헌법 규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법률 규정의 무지와 경제적인 이유로 수사과정의 초기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다 보니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장애인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현재 로스쿨 졸업생이 매년 1,500명 정도 배출이 되고 있다. 이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일정기간 동안 경찰관서에서 실무적인 차원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법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8) 서울신문, 국선전담변호사 시행 5년, 2010.8. 6.

39) 이기수, 앞의 책, 275면.

4. 장애인 전문 통역인의 양성과 의무 참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상 경찰관은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인 이상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수사시 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수사관에게 법률적인 지식이 있고, 법적인 마인드(Legal mind)를 가지며, 장애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화통역사의 경우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 법원 등에 수화통역사를 의무배치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⁴⁰⁾ 그 보

40) 2012년 9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관련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방청객인 청각 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방청객 가운데 원고의 당사자가 없고, 변호사가 대리 출석을 했기 때문에 수화통역을 허가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원고 측이 제시한 통역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불허했다.’ 라고 했다. 인화학교 문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라 청각장애인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법원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정통역사를 배치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통역 신청을 안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건이다. 웰케어뉴스, 수화통역 불허한 법원을 규탄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2. 9. 10.

다는 먼저 부족한 수화통역사 양성·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한 예로 인천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사가 8명으로 1만4천여 명이나 되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서비스 요청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더욱이 비장애인들이 수화통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잠재적 수요자는 더 늘어난다. 실제로 통역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자 중 비장애인 비율이 약 30% 정도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통역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통역사는 밤낮, 주말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 큰 문제는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겪는 어려움이다. 인천에 통역을 전문적으로 할 만큼 실력이 되는 자원봉사자는 10여 명 정도이다. 이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통역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사비를 쓰며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경찰 등 관공서의 서비스 요청은 수당이 지급되지만, 고정적 수입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면서도 통역사로 활동하지 않은 이유다.⁴¹⁾

따라서 장애인활동 보조인처럼 수화통역사도 정부차원에서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화는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법률, 수사, 재판, 의료 등 분야에 따른 전문 통역가 양성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시각 장애인의 경우 진술을 보조해주고, 대독, 대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형사절차상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41) 인천일보, 수화통역사 1명당 2천명 담당 ...'장애인 안전'속수무책, 2012. 5. 7.

5. 경찰서 장애인 유치실의 개선

경찰서의 유치장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가 수용되는 곳으로서, 주로 체포·구속된 형사피의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2012년 9월 현재 전국 경찰관서의 유치장 개수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용감방 5개와 유치장 107개로 총 112개의 유치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용감방 55개의 유치실과 868개의 유치장 유치실을 합쳐 총 923개의 유치실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은 피의자 등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첫 단계로서 교도소나 구치소보다 훨씬 심리적인 충격이 큰 곳이어서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두통·복통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인권보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곳이다.

[표 7] 전국의 유치장 운영 현황⁴²⁾

(단위 : 개)

구 분	유치장수	유치실수	유치인보호관		
			총계(명)	남(명)	여(명)
계	112	923	1,073	968	105
유치장	107	868	1,012	908	104
대용감방	5	55	61	60	1

42) 경찰청, 유치장 운영 현황, 2012. 9,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특히, 유치장 내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유치인은 소수임에도 대부분의 유치인을 통제관점에서 관리함으로써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 경찰서의 유치장 운영 방향을 「통제에서 인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일선 경찰서의 유치실은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신체장애인,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는 그들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유치인 신분으로서 그들의 생활이 굉장히 곤란하였다. 한 예로 유치실 내에 장애인용 변기가 구비되지 않아 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최근까지의 문제로 경찰청은 2013년 경찰서 유치장 내 기본적인 생활환경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장애인, 여성유치인, 청소년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노후된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유치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20억원을 들여 환기, 환풍, 화장실 시설이 열악한 유치장 10여개소를 인권 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나머지 100여개 유치장은 앞으로 2017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들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⁴³⁾ 또한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은 대부분이 개방형 화장실로 냄새와 소음으로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⁴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밀폐형으로 개선하

43)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44) 헌법재판소 2001. 07.19, 2000헌마 546 판결 (유치장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 확인) 경찰서 유치실내 개방구조 화장실 사용강제행위의 인격권 침해여부의 내용으로 사건은 2000년 8월 청구인들은 김희빛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관할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유치기간 동안 유치장 밖의 일반화장실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유치장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사용만 가능하였는데, 그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 등이 노출되는 개방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이와 같은 화장실의 사용을 강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 동안 (내용생략)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고자 하였다.

앞으로 신축되는 경찰서의 유치장에는 장애인의 특성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유치실을 따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경찰서 유치장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장애인 유치실을 조속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장애인을 비롯한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러한 유치장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실질적인 측면도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장애인의 보조 기구 구비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의 장애인들은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인 장애인들이 있다. 그들은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동 휠체어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신체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수사관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동 휠체어 등 장애인 활동보조 수단과의 분리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 등 수사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 하였다. 이는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선포 결의 대회” 집회를 개최하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을 연행하였고, 여기에 중증장애인들을 전동 휠체어와 분리하여 연행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전동 휠체어에서 끌어내려졌고, 경찰의 조사가 종결된 후에도 전동휠체어가 도착하지 않아 정신적 불안을 겪었다.⁴⁵⁾

만약 불가피하게 전동휠체어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은 상당한 주

45) 국가인권위원회, 체포 등 수사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 권고, 2007. 1. 3.

의를 해야 하며, 그 분리시간은 최단시간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전동 휠체어와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Low Floor Bus)⁴⁶⁾의 완벽한 정착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과 동시에 그의 전동 휠체어가 경찰관서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 경찰관서로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서에서 중증 장애인을 조사, 유치, 귀가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여 이들의 신체활동을 보조하고, 정서적인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7. 장애인 수사시 속기사 지원의 정착

경찰은 2012년 1월 경찰은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속기사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수사시 속기사의 지원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12년에 「녹취록 작성 예산(5억여원)」을 신규로 확보하였다. 이는 경찰의 수사 편의적 조서작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피해자를 배려한 조사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보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진술녹화나 조서 작성하는 경우 장애인들은 불안감을 나타내며 그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46) 저상버스는 버스 바닥을 낮춰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에 타며, 버스 안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버스다. 저상버스는 차 바닥의 높이가 35cm로 1m 10cm인 일반 버스보다 훨씬 낮고 계단이 없어 노약자나 장애인의 탑승이 편리하다. 유럽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시내버스에 기본모델로 도입했고, 일본에서도 1999년부터 시범운행을 시행하고 있다. <http://terms.naver.com>(2012. 11. 1, 검색). 2012년 12월 7일 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하면, 2013년 19.1%의 저상버스 도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41.5%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은 12%이다. 국민일보, 장애인단체 '알맹이 없다' 비판, 2012. 12. 8일자.

있다. 그리고 진술녹화 후에는 경찰관이 녹취록을 작성하는 동안 장애인은 진술확인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원스톱센터에 근무하는 여자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속기사의 지원 필요성을 가장 희망하였다. 그 결과 초창기인 2011년에는 1억 2,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전체 사건과 대비하여 너무 부족하였다. 이후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여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2012년 5억 여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⁴⁷⁾

장애인 조사시 속기사 지원은 전국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그 대상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다. 이는 경찰관의 조서 작성을 배제하여 장애인에게 편안한 조사환경을 제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조사시간을 단축시키며, 조사 후 녹취록을 교부하여 진술 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경찰의 장애인 수사시에 그 신뢰성을 제고시킨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대상 사건을 성폭력 범죄로 한정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 대상 모든 범죄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속기사의 지원 정착이 장애인 인권보호 측면에서 경찰의 역할로 한걸음 더 나아가리라 본다.

47)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VI. 결 론

최근까지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나 기본권은 많은 부분에서 경시하고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 인권이 무시 당한 것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하나 둘씩 제정·개정이 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과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서서히 변화가 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법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법률들이 제정 및 개정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정비되고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 변화가 경찰기관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실례로 얼마전 전북지방경찰청은 장애인 단체 등 17개의 외부단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사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합동점검을 하였다.⁴⁸⁾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조사 사무실 등 피조사자 이용 시설, 기타 경찰관서 전반에 걸쳐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하였다. 그 결과 전북지방경찰청 관할 15개 경찰서에서 모두 55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문제점으로 발견된 장애인이 불편한 경찰서 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은 바로 개선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여 마무리 하기로 약속하였다. 경찰의 이러한 실천 모습들이 국민의 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경찰기관은 강도 높은 인권교육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48) 전북지방경찰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사환경 개선, 내부자료, 2012. 12.

건수를 조금씩이라도 감소시키고 있으며, 경찰청 인권센터는 인권 보호에 관한 직무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불법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시간을 갖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인권 강사를 양성하여 적극적인 참여형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인권교육이 전문 장애인 단체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해 주고, 신뢰관계자 등 보조인을 동석시키는 것은 물론 변호인의 접견, 입회, 장애인 전문 통역인의 참여, 장애인 수사시 속기사 지원의 정착, 장애인의 보조기구 구비 등을 확실히 보장해 주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장애인과 관련된 범죄사건은 반드시 진술영상녹화를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점자문서, 화면읽기프로그램,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장비확보를 위한 적극적 예산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 이들을 위해 경찰관서에는 최근 유치장 시설의 개선처럼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휠체어와 같은 보조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수사과정의 작은 부분에서부터라도 장애인의 인권보장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경찰 모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I. 국내·외 문헌

- 경찰청, 유치인 인권존중을 위한 유치장 표준 설계 개선안, 발표자료
집, 2012. 10.
- _____, 진술녹화실 설치 현황, 2012, 8.
- _____,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현황, 2012. 9.
- _____, 유치장 운영 현황, 2012. 9.
- _____, 피의자 검거인원 대비 현황, 2012. 9.
- _____,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현황, 2012. 9
- _____, 피의자 검거인원 대비 현황, 2012. 9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2010. 11. 25.
- 국가인권위원회, 체포 등 수사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 권고, 보도자료, 2007. 1. 3.
- 국가인권위원회, 미성년 지적장애인 강압수사한 경찰 징계 권고, 보도
자료, 2009. 1. 5.
- 김재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진술증거 수집에 관한 연구, 경
찰학 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3호), 경찰대학, 2010.
- 金哲洙, 憲法學新論, 博英社, 2010.
- 김택수, 형사절차법상 장애인 차별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제5
권 제2호, 경찰법학회, 2007.

- 盧廣鎬, 障碍人の 人權에 關한 憲法的 考察,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 양상섭, 범죄수사과정에 나타난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서울 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 이기수, 수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보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0집, 2012. 10.
- 이기수, 허위자백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2012. 7.
- 이영돈,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법적 지원에 관한 연구 - 영국 PACE(경찰과 형사증거법)와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은미·한상훈·김지혜, 영성장애인 피의자의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2005.
- 이소영, 미국과 한국의 장애차별금지법 비교(제정과정의 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비교법문화연구원 2012년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2, 11. 3.
- David Dixon, Questining suspect, Journal of Contemporary Justice 26(4), 2010.
- Johnson, Andrew & Topp, Silent Victims: a Study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victims of Crime, Victorian Office of the Public Advocate, Melbourne, 1988.
- Marc Do Stolman, A guide to Legal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emos Publications, Inc., 1994.

II. 언론 및 인터넷 웹 사이트

뉴시스, 해경, 청각·언어 장애인 수화 통역 상담서비스, 2012. 10. 2.

웰페어뉴스, 수화통역 불허한 법원을 규탄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2. 9. 10.

인천일보, 수화통역사 1명당 2천명 담당...'장애인 안전'속수무책,
2012. 5. 7.

국민일보, 장애인단체 '알맹이 없다' 비판, 2012. 12. 8.

한국일보, 후천적 고령 장애 급증...장애인 6년새 50만명 늘어, 2012.
12. 6.

책임연구보고서 2012-09

수사에 있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경찰의 역할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조 요 섭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